



제 42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농약관리법」 상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의 해촉사유 표현 정비〉
■ 최보운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0034호)

2025. 6.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총괄검토	2
1) 농약관리법	9
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
3) 농업협동조합법	18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2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최보윤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5. 4. 22.
3. 회 부 일 : 2025. 4. 2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약관리법」 등에서는 임원, 각종 위원회와 협의회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에 대하여 “심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임원의 해임 사유 또는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자칫 “장애인”을 임원이나 위원 또는 비상임심판관 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심신장애”를 임원의 해임 사유나 위원 및 비상임심판관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표현을 개선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총괄검토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심신장애”를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농약관리법」,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농업협동조합법」, 「축산계열화 사업에 관한 법률」 총 4개 법률에 대하여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표현을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략)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4. (생략)	제5조(위원의 해촉) ----- ----- -----.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4.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 ③ (생략)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u>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 4. (생략) ⑤·⑥ (생략)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 1.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2. ~ 4. (현행과 같음) ⑤·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는 위원의 해촉 사유에 “심신장애”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장애인을 위원구성에서 배제한다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해당 표현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제안된 것으로 보임.

4건 모두 부칙에서 시행일을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로 규정하고 있음.

나. 주요 쟁점사항

1) ‘심신’의 의미

동 개정안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현행 4개의 법률에서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심신장애”가 정신적 장애(心神障礙)만을 의미하는지, 신체적·정신적 장애(心身障礙)를 모두 의미하는지가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먼저, 심신장애(心神障礙)라는 표현과 관련, 표준국어대사전은 이를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설명하고 있음. 이에 「알기 쉬운 법률용어」(2020)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은 ‘심신장애(心神障礙)’를 ‘정신장애’로 정비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한편, 심신장애(心身障礙)라는 표현과 관련, 표준국어대사전은 ‘중증 심신장애(重症心身障礙)’를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겹치고 그 정도도 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종전 「심신장애자복지법」¹⁾은 심신장애를 ‘心身障礙’로 표현하였고, 현행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괄하고 있음²⁾.

1) 「심신장애자복지법」(제3755호 연혁법. 이후 「장애인복지법」으로 개정됨)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심신장애자”라 함은 지체불자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음성·언어기능장애 또는 정신박약등 정신적 결함(이하 “心身障礙”라 한다)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한편, 개별 입법례에서도 심신장애의 표기는 다음 표와 같이 각각 달리 나타나고 있음.

【 ‘심신’이라는 용어 관련, 입법례 】

심신(‘心神’)으로 표현 정신적 장애		심신(‘心身’)으로 표현 신체적·정신적 장애	
형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인) ① <u>심신장애</u>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헌법 제106조	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감봉 기타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법관이 중대한 <u>심신상의 장애</u>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 제10조	제10조(심신장애) ① <u>심신(心神)장애</u> 로 인하여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없거나 그 판단에 따른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u>심신장애</u> 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능력이 미약한 자의 질서위반행위는 과태료를 감경한다. ③ 스스로 <u>심신장애</u> 상태를 일으켜 질서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검찰청법 제39조 의2	제39조의2(<u>심신장애</u> 로 인한 퇴직) 검사가 중대한 <u>심신상의 장애</u> 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은 법무부장관의 제청에 의하여 그 검사에게 퇴직을 명할 수 있다.
외국법 자문사법 제12조	제12조(등록거부 등) ① 대한변호사협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나 제11조제3항에 따른 등록의 갱신신청을 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외국법자문사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 또는 등록의 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1. <u>심신장애(心神障碍)</u> 로 인하여 외국법자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생략)	예금자 보호법 제13조 의3	제13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임기 전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되지 아니한다. (생략) 3. <u>심신의 장애</u> 로 직무 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된 경우 (생략)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다만, 현행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4개 법률에서는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불분명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개별 법률별로 위원회 업무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2) ‘사고’ 요건의 필요성

다음으로, 개정안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사고”란 “뜻밖에 일어난 불행한 일”을 의미함.

현행법이 “심신장애”를 해임 또는 해촉 사유로 규정한 것은 위원회 위원 또는 기관의 장 등이 질병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 해당 조직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임.

따라서, 개정안이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는바, 개정안에 따를 경우 현행에 비해 위원회 위원의 해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촉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요건의 필요성

한편, 개정안은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환자 본인만이 발급 가능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대신에 해당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개별 법률 검토

1) 농약관리법

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
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사
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23조의5(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⑥ -----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운 경우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2. ~ 4. (현행과 같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 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 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문구 수정 필요

③ 검토 의견

조정위원회는 농약 피해를 입은 자가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³⁾으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⁴⁾.

3) 「농약관리법」

제23조의4(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調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이하 “농약피해”라 한다)와 관련된 분쟁을 조정한다.

1.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2. 제23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농작물에 해(害)가 있는 경우
3. 방제업자가 제23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해를 입은 경우 또는 제23조제5항에 따른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4. 그 밖에 조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농약관리법」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①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농약피해를 입은 자는 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과 피신청인, 이해관계인,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조사, 의견 청취, 조정 등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③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농작물의 피해규모 산정 및 분석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⑧ 제2항에 따른 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현황 】

구 분	내 용
위원회 개요	○(설립 배경)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 전면 시행('19)으로 농약 비산 등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조정위원회 설치('23) ○(주요 기능) 농약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된 분쟁* 조정 * 타인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농작물에 해가 있는 경우 등
위원회 구성	○(위원장) 농관원장(농식품부 장관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 ○(위 원) 29명(농식품부 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 * 당연직(공무원) 8명, 위촉직 21명(법조계, 학계, 민간 전문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출(2025. 6. 13)

【 농약 피해 주요 분쟁 유형 】

주요 분쟁유형	농약피해 내용
농업인 - 농업인	다른 사람이나 기업, 기관 등이 살포한 농약등으로 인해 자신의 농작물이 오염된 경우
농업인 - 제조업자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농약등을 사용하였음에도 자신의 농작물에 해가 있는 경우
농업인 - 방제업자	방제업자가 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하여 자신의 농작물이 해(害)를 입은 경우 또는 미등록 농약등을 사용한 경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출(2025. 6. 13)

개정안과 같이 조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할 경우 장애인 차별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① ‘심신’의 의미와 ② ‘사고’,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현행법에서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심신장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조정위원회 위원은 현행법 제23조의7제4항⁵⁾에 따르면 농약 피해와 관계 있는 장소의 출입·조사를 수행할 수 있어, 신체적 활동이 수반되므로 해충 사유에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②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위원회 위원의 해충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현행에 비해 해충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충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기관

5) 「농약관리법」

제23조의7(분쟁조정절차 및 효력) ④ 조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사실관계 조사 등 분쟁조정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 대한 출석 및 진술 요구
2. 감정인의 출석 및 감정 요구
3. 사건과 관계있는 문서 또는 물건의 열람·복사·제출 요구
4. 사건과 관계있는 장소의 출입·조사

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별감찰관법」⁶⁾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⁷⁾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해촉사유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6)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를 ‘사
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의 해촉) 대통령은 위촉위원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 ----- -----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 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 4. (생략)	2. ~ 4.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
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문구 수정 필요

③ 검토 의견

위원회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발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대통령 소속 기구로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있음.

【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개요 】

구 분	내 용
위원회 개요	○(설립 배경) 대통령 선거공약, 국정과제(83번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 설치 추진'), 「농특위법」 시행('19.4.25)에 맞춰 발족 ○(주요 기능) 농어업·농어촌 관련 범정부적 협의체로서, 농어업·농어촌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논의하는 대통령 자문기구 *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 농어촌지역발전, 먹거리 등에 대한 협의, 심의·의결을 통한 자문
위원회 구성	○(위원장) 장태평(제3대 위원장, '22.12.05 임명) ○(위 원) 당연직 5명*, 위촉직 24명(제3기, '23.06.19 ~ '25.06.18) * 기재부·농식품부·해수부장관, 국무조정실장, 식약처장 ○(사무국) 사무국장 이재식(농식품부 고공단 나급) - 5개팀: 총괄기획팀(7명), 농어업정책팀(6), 농어촌정책팀(6), 농수산식품팀(6), 대외협력팀(3)
분과위원회 등	○(분과위) 농어업분과위, 농어촌분과위, 농수산식품분과위 ○(특별위) 산림특별위*, 바이오경제특별위** * 정은조 위원장(現산림휴양복지협회 회장) 등 총 15명 ** 김성민 위원장(現한국농식품융합연구원 원장) 등 총 15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출(2025. 6. 13)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면, 장애인 차별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① ‘심신’의 의미와 ② ‘사고’,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현행법에서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심신장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는 등 신체적 활동이 수반되므로 해촉 사유에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②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현행에 비해 해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촉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별감찰관법」⁸⁾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⁹⁾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해촉사유를 “직무수행이 현저

8)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농업협동조합법

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 행	개 정 안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 ③ (생 략)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대표이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지정 철회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④ ----- ----- ----- ----- -.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1.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관계기관 의견

<농림축산식품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 다만,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문구 수정 필요

<농협중앙회>

통상적으로 진단서는 장기간의 요양이 필요 등으로 발급해주는 데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③ 검토 의견

협의회는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축산물 판매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기구임¹⁰⁾.

10)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7(농산물등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1조의6제1항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을 연 1회 이상 평가·점검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협의회의 자문 내용을 고려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의 임직원에게 경영지도, 자료 제출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수행하는 농산물등의 판매활성화 사업 평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 현황 】

구 분	내 용
협의회 개요	○(설립 배경) 농협중앙회를 1중앙회-2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농협법」 개정('11.3.31 공포, '12.3.2. 시행)에 따라 농협경제지주의 경제사업활성화 평가 도입으로 경제사업활성화 자문 등을 위해 발족 ○(주요 기능) 농협경제지주 사업 평가·점검에 관한 사항과 기타 농식품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협의회 구성	○(위원장)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위 원) 당연직 6명*, 위촉직 9명('24.07.08 ~ '26.07.07) * 농식품부 차관, 농협경제지주 본부장 3, 조합장 2 ○(사무국) 별도 사무국 없음
분과위원회 등	○ 분과위) 농협경제사업실무협의회 * 위원장(농업정책관 등 총 20명(생산자, 전문가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출(2025. 6. 13)

개정안과 같이 협의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면,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① ‘심신’의 의미와 ② ‘사고’,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를 추가하는 개정안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현행법에서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심신장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는 등 신체적 활동이 수반되므로 해촉 사유에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②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현행에 비해 해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촉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별감찰관법」 11)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12)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해촉사유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

11)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한편,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가 자문위원회로서 그 개최건수가 연 평균 2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여 동 협의회를 비상설화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취지의 개정안¹³⁾이 제출되어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농협 경제사업 평가협의회 개최 현황 】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21년	2	1	1	0	1	0	1
2022년	2	1	1	0	1	0	1
2023년	3	2	1	1	1	1	0
2024년	2	2	2	0	0	0	0
총계	9	6	5	1	3	1	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출(2025. 6. 13)

13)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4.7.)

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①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촉 사유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개정안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생략)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	⑤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	2. <u>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이 있는 경우</u>
3. 4. (생략)	3. 4.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 의견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표현을 개선하는 법률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유사 입법례를 참고하여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문구 수정 필요

③ 검토 의견

축산계열화사업은 계열화사업자가 계약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등을 다시 출하 받은 후 사육비 등을 지급하는 사업¹⁴⁾임.

축산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신의성실의 원칙¹⁵⁾에 따라 계약상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고,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와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¹⁶⁾.

14)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축산계열화사업”(이하 “계열화사업”이라 한다)이란 제5호에 따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제6호에 따른 계약사육농가에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 등을 공급하여 가축을 사육하게 하고, 사육된 가축 또는 그 가축으로부터 생산된 축산물을 계약사육농가로부터 다시 출하받는 사업을 말한다.

15)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6)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9조(준수사항) ① 계열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당하게 가축, 사료 등 사육자재를 공급하거나 계약농가로부터 가축 또는 축산물을 출하받아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이 되는 행위

【 축산계열화사업자 현황 】

□ 축산계열화사업자 현황('24)

- 육용계(육계·삼계·토종닭) 73개소(계열화율 94.6%), 오리 16개소(97.6%), 돼지 116개소(33.6%)
- 표준계약서 사용 : 육용계 47개소(82.5), 오리 16개소(100%)
- 농가협의회 구성 : 육용계 22개소(38.6%), 오리 11개소(68.8%)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출(2025. 6. 13)

조정위원회는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등 계열화 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해당 위원회는 현행법이 시행된 2013년 2월 이후 2015년에 단 1회만 개최되었음.

2. 제2조제7호에 따른 농가지급금,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상금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 또는 정산하여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3. 계열화사업 계약 관련 부당한 요구, 계약의 변경 또는 불이행으로 계약농가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의 행위로서 계약농가와 계열화사업자 간 상생의 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열화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다.

④ 계약농가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축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 출하를 기피하는 행위
2. 계열화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가축의 품질 또는 출하기일에 관한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행위
3. 농가지급금 등을 인상하여 줄 것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4. 사전 통보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열화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5.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6.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현황 】

구 분	내 용
위원회 개요	○(설립 배경)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의 분쟁조정을 위해 설립('13.2.23) ○(주요 기능) 계약서(법 제7조), 사육경비 등(제8조), 준수사항(제9조) 및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계열화사업자 또는 계약농가가 계열화협의회에서 자율적인 사전 조정 결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항 및 제25조 제4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사무를 관할
위원회 구성	○(위원장) 김민경(재선 '24. 10. 10) ○(위 원) 위촉직 7명*(제2기, '24.10.10 ~ '27.10.09) * 법조인(2명), 전문가(4명)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제출(2025. 6. 13)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단 1회 개최된 사례 외에는 축산계열화 사업 분쟁조정 신청이 없어 2015년 이후 조정위원회를 개최(서면 또는 현장 개최)한 실적이 없다는 입장임.

개정안과 같이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를 변경하면, 장애인 차별 조항을 정비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분쟁조정 신청 자체가 없어 조정위원회가 개최된 실적이 1회에 불과한 것은 동 위원회의 설립 목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투입된 예산 및 인력 등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조정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개최건수가 1회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비상설화하려는 취지의 개정안¹⁷⁾이 제출되어 농림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이므로, 개정안 심사 시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조정위원회를 향후에도 유지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① 현행법에서 심신장애에 대하여 별도의 한자를 두고 있지 않아 심신장애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하는 등 신체적 활동이 수반되므로 해촉 사유에 신체적 장애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다음으로, ② 기존에 포함되지 않던 “사고”라는 요건을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에 추가함으로써 현행에 비해 해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해촉 사유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③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을 발급 받으려면, 환자 본인이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대한 신청을 하여야 하는바,

17)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 ‘24.7.)

개정안에 따르면,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 수행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라도 본인이 이에 대한 진단 또는 소견을 의사에게 신청하지 않거나, 진단 또는 소견 발급 신청을 하더라도 이를 기관에 제출하지 않으면, 해촉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우려가 있음.

따라서, 「특별감찰관법」¹⁸⁾ 및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¹⁹⁾ 등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해촉사유를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안을 이와 같이 수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18) 「특별감찰관법」

제14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감찰관을 해임할 수 없다.

1. 제13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9)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해임 등)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

1.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

2.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4.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게 준용되는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 또는 제8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

참고1

농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연번	구분	자격	전문분야	성명
1	위원장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
2	위원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정보자재과장
3	위원	공무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안전과장
4	위원	공무원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방제과장
5	위원	공무원	농촌진흥청	농자재산업과장
6	위원	공무원	농촌진흥청	잔류화학평가과장
7	위원	공무원	농촌진흥청	독성위해평가과장
8	위원	공무원	농촌진흥청	작물보호과장
9	위원	공무원	산림청	산림병해충연구과장
10	위원	법조계	법률 자문	김석기
11	위원	법조계	법률 자문	박나현
12	위원	법조계	법률 자문	이승태
13	위원	법조계	법률 자문	김서균
14	위원	법조계	법률 자문	염승하
15	위원	법조계	법률 자문	최린아
16	위원	학계	농약 잔류	경기성
17	위원	학계	농약 잔류	김인선
18	위원	학계	농약 잔류	문준관
19	위원	학계	농약 잔류	최 훈
20	위원	학계	농약 잔류	장희라
21	위원	학계	농약 활성	김재수
22	위원	학계	농약 활성	김흥태
23	위원	학계	농약 법규	김장억
24	위원	학계	농약 독성	조은혜
25	위원	전문가	농약 독성	김용범
26	위원	전문가	농약 법규	김 군
27	위원	전문가	농약 활성	진나영
28	위원	전문가	농약 독성	김향연
29	위원	전문가	농약 잔류	이정아
30	위원	전문가	농약 독성	남선화

참고2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 현황

위원장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장	태	평
위 원	기획재정부 장관	공		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	미	령
	해양수산부 장관	강	도	형
	국무조정실장	방	기	선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오	유	경
	농협중앙회장	강	호	동
	산림조합중앙회장	최	창	호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	최	홍	식
	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이	승	호
	前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이	숙	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	노	만	호
	동해구기선저인망수협 조합장	김	태	훈
	한국수산물회 회장	정	영	훈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회장	안	창	희
	한국임업인총연합회 회장	박	정	희
	前 한국4-H중앙연합회 회장	김	기	명
	前 청년여성농업인협동조합 회장	박	다	정
	건국대 상허생명과학대학 학장	김	민	경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	김	용	하
	한국수산물자원공단 이사장	김	종	덕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방문학자	김	창	길
	전남대 해양생산관리학과 교수	김	태	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	김	한	호
	前 한국교육개발원 원장	류	방	란
	보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문	병	완
	서울시립대 환경원예학과 교수	우	수	영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이	기	원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학장	장	관	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장	한	두	봉

참고3 농협경제사업 평가협의회 위원 현황

□ 구성 : 15명

구 분	대 상	위 원 명	비 고
농식품부 장관 지정(1명), 위촉(9명)	농식품부 공무원 1명	차 관(장관 지정, 위원장)	
	농업인단체 대표 2명	이승호(한국농축산연합회 회장) 김향숙(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회장)	
	유통 및 농업관련 전문가 3명	김성훈(충남대 교수) 권오엽(aT수출식품이사) 김미복(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농축산업 관련 국가·연구·교육기관, 기업 종사경력자 3명	최영민(한국식품연구원 기업솔루션연구센터장) 장애라(강원대 교수) 안병일(고려대 교수)	
	그 외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 1명	남인숙(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농협경제지주 대표이사 위촉(5명)	농협경제지주 소속 임직원 및 조합장 5명	유재웅(경기동부원예농협 조합장) 김진만(동해삼척태백축협 조합장) 정승일(경제기획본부장) 김주양(산지도매본부장) 공형식(축산기획유통본부장)	

□ 임기 : 2년('24.7.8.~'26.7.7.)

참고4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위원 현황

분 야	성 명	직 위	소 속	비 고
정 부	축산경영과장		농림축산식품부	당연직
법조인 (2명)	서승희	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현	위촉직
	배지영	변호사	법무법인 제이	위촉직
전문가 (4명)	김민경	교수	건국대학교	위촉직
	전상곤	교수	경상대학교	위촉직
	이지웅	교수	전남대학교	위촉직
	한석호	교수	충남대학교	위촉직

※ 위촉기간 : 2024. 10. 10. ~ 2027. 10. 9. (3년)

문 의 처

02)6788-5426
